

Policy and Law Report _Vol.11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22~ 11.28) -

November 29,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래 사항들을 논의함 ①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 지난 추경시 확보한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0.7조원)은 지난 10월 3,875억원 지급되었고 11월 사용분도 오는 12/15 지급 예정 -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와 관련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여 올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토록 조치 ③ 4/4분기 주요정책 점검·대응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④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 초광역권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1.6월 발의) **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 고려하여 개발한 지구 ⑤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 적극 추진 *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통합판정체계」 도입, 재택의료센터 설치 등 **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시 입원료 수가 지급수준 조정 등 제도 내실화 *** 매년 점증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최적 위험수준 선택	2021-11-23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합성연료(e-Fuel) 제5차 연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합성연료(e-Fuel) 제5차 연구회」를 개최하고, 정유·자동차·항공 등 미래 수송연료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함 금번 연구회에서는 지난 4차례 간 논의에서 다루었던 좁은 의미의 재생합성연료(e-Fuel)의 기술동향과 경제성 분석에서 더 나아가, 수송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넓은 의미의 '탄소중립연료'의 의의와 기술동향 및 과제를 검토함	2021-11-23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탄소중립연료(바이오연료 및 e-Fuel) 활용 방안 ②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 계획 ③ 재생연료의 수송분야 적용을 위한 고찰 ④ 항공분야 탄소중립화 동향 등이 있음	
	•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지난 9월 29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1차 무역기술협의회(TTC*)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함 * 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는 지난 6월 열린 美-EU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양자간 공동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기술·통상 이슈 등에 대한 공조 강화를 위해 출범한 협의체 이번 회의에서는 1차 TTC 합의* 내용 중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① 美中 핵심기술과 안보 문제, ② 비시장경제 불공정관행, ③ 무역과 노동, ④ 무역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중심으로 논의함 * 투자심사, 수출통제, AI, 반도체 공급망, 글로벌 무역 도전과제 등 5개 분야 합의 부속서 발표	2021-11-25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수입자 전용 채널 신설 등 수입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수입자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수입자의 관심이 높은 맞춤형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수입식품 검색,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통계자료 등 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에는 수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콘텐츠 조사* 결과를 반영했으며, 자사 수입신고 민원 진행상황, 부적합 또는 회수·판매중지 정보 등 수입자가 원하는 통계자료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활용성을 한층 높임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수입식품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4.20~30) 주요 개편 내용은 ①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채널’은 수입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화면과 메뉴를 구성한 수입자 전용 공간으로 민원(수입신고 등) 신청, 민원 진행현황, 성분코드, 부적합 수입식품, 식품원료, 품목별 규격 등 각종 정보를 한 번에 조회 ② 우리회사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③ 관심정보 설정·배달 등이 있음	2021-11-22

부처	내용	일시
금융 감독원	• 전환사채 관련 규정 개정(12.1.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상장회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안내함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가액 조정시 유의 사항으로는 ① 최대주주등의 CB 콜옵션 행사 한도 등 제한 관련 - 상장회사는 CB콜옵션 행사 등을 통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발행당시 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 상장회사는 '제3자가 CB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자기CB를 매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신설)를 제출해야 함 (거래소 공시의무는 없음) ③ 상향조정 리픽싱(Refixing) 의무화 관련 - 시가하락 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는 CB를 사모발행할 경우에는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조정되도록 해야 함 ④ 적용 대상 및 시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은 상장회사에 한하여, '21.12.1일 이후 이사회에서 최초로 발행이 결의된 전환사채부터 적용됨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21.11.30. 이전 이사회에서 발행을 결정한 전환사채는 적용대상이 아님 ⑤ 규정 위반시 - 상장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기재누락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규정상 한도를 초과하여 CB콜옵션을 행사하게 하거나, 상향조정 리픽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정명령,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2021-11-22
입법 조사처	• 「이슈와 논점」 - 중국의 전력부족 사태 원인과 시사점 발간 중국은 2021년 9월 말부터 석탄수급 문제로 전력공급 부족사태를 겪었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전력시장 제도를 개혁하고 요소 등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전 검사의무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경 석탄으로부터 추출되는 요소에 대한 수출전 검사의무조치를 단행하면서 국내 요소수 공급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음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 중국의 전력부족 사태 원인과 시사점」을 통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2021-11-24

부처	내용	일시
	①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이루기 위하여 에너지수급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전력시장 구조를 재편할 것 - 중국의 전력시장 개혁 조치도 연료시장 비용이 전력시장으로 전달되고, 전력시장 내에서 도매시장 가격이 소비자 요금으로 반영되어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회수하고 적정 이윤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평가 ② 에너지전환 시기의 과도기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갖출 것 - 화석연료 중심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시장으로 전환할 될 때까지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양 기술의 동거 이후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구조조정이 원활하도록 요금제도 설계 필요 ③ 에너지전환에 따른 연료 · 곡물 · 금속수급 영향을 자원안보 강화 차원에서 검토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2021.11.23. 시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② 용어 변경 (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제16조의8·제16조의13)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 ③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 정비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 ④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제6조제5항) -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제1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제5호 신설) -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021-11-2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⑥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제14조제1항)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⑦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제14조의3 신설) -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 ⑧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제8항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제20조의2)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 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 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제22조의2제10호 신설) -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⑪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제25조 신설) -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1.24. 시행) 1회용 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납부의 편의성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 의무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 이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1-11-2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와 1회용 우산 비닐을 1회용품에 추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 (제17조제3항) - 1회용 컵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등은 판매하는 제품가격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함 ②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 (제28조의3 신설)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폐기물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 등으로 정함 -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폐기물부담금 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 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제18477호, '21.10.19.)이 개정됨 이에 따라 앱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이용자의 보호 규정 등 마련 ②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를 고려하여 규정 ③ 자료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도 등 신설(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 사실조사 시 자료(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루 평균매출액 산정기준 등 마련 - 대기업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④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유형·기준 마련(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 ⑤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안 46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의견제시기간 : 11/24(수)~22년 1/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로 제출	2021-11-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력 부족 등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포상금 제도가 미비하여 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 ·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의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의견제시기간 : 11/26(금)~22년 1/5(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	2021-11-26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위원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2인)」 현재 광고를 맡기는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영상 혹은 기사 형태로 광고를 의뢰하는 이른바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만연해 있음 그러나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객관적인 기사·방송이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산 손해나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은 없는 상황임 또한 기사형·방송형 광고는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임을 숨길 경우 영향력이 큰 소비자 기만행위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업계의 자율규제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금지 대상인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2021-11-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신용평가회사가 평가때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상황과 사업·경영·재무위험 등 미래전망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최근 기후변화 심각성과 피해 급증으로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대응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기업의 기후변화 대처 여부 또한 기업의 미래전망 및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아직 신용평가회사는 전통적·관성적인 관점에서 단기적 시각으로만 기업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흐름이나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평가하지 않고 있음 최근에도 신용평가회사는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낙관적인 평가등급을 부여했고 지속적인 화력발전 사업 자금이 존재하는 나쁜 결과를 낳고 있음	2021-11-2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 위원회	이는 국책금융공기업과 은행, 금융투자업자까지 고위험 좌초산업에 투자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임. 이 투자 자금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과 예금으로 잘못된 투자는 실패에 따른 손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이에 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335조의11제2항)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u>」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전량 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지분만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로 인해 주식전량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분산하여 여러 계열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있음 반면 영국 등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또는 공개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잔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매입을 유도하고, 소액 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133조의2 신설 등)	2021-11-23
	• 「<u>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의원 등 12인)</u>」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비대면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가진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책임소재가 부족한 문제, 온라인 플랫폼 회사와 공급업체들 간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1-11-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고객” 등 이 법의 적용대상 및 주요 개념 등을 정의함 (안 제2조)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 (안 제6조) ③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안 제7조) ④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⑥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⑦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과 공급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⑧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⑨ 온라인 플랫폼과 공급자 간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⑩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2021-11-24
기획재정 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경우 주택 등 자산의 거래량이 많음에도 개인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바, 법인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초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 매수한 주택 46,858채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55%에 달하고,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5,431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이 확인될 만큼 법인의 주택 투기가 심각한 상황임	2021-11-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주택 등의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100분의 35를,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국내에서 발생한 LTE, 5G, Wifi, Wibro의 총 트래픽은 '17년 기준 3,702,202테라바이트(TB)에서 '20년 기준 7,837,438테라바이트(TB)로 폭증하였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8,535테라바이트(TB)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이처럼 온라인 서비스가 사회 전반을 연결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플랫폼 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가 국민 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트래픽 발생량이 해마다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특히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사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21년 2분기 기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발생 비중이 78.6%인 반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중은 21.4%에 불과하여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유발되고 있는 점이 확인됨. 이처럼 국내 인터넷 망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 달리, 일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조차 외면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2021-11-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성범죄 촬영물, 합성·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대면 사회의 도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ICT환경 변화에 따라 SNS, 유튜브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총포·화약류 관련 정보, 마약 유통 관련 정보, 사행행위 정보, 성매매 정보 등 각종 범죄 정보까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각종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을 받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10 신설)	2021-11-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률이 97.1%에 달하고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도 90%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과 국민의 실질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권 보장이 주요 화두로써 논의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이용자 데이터를 다수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데이터 이전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휴업·폐업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3항 및 제96조제7호의2 신설)	2021-11-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2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과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음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는 비용절감, 최적의 마케팅 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최첨단 기술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이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알고리즘”,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③ 정부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④ 정부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성과를 실용화·사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⑤ 고위험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의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위험인공지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5조) ⑥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또는 거부권 등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함 (안 제19조) ⑦ 이용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안 제20조)	2021-11-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⑧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23조) ⑨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지난 11월 초 넷플릭스가 국회 및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내에서의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력적인 모습을 기대했지만,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오히려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과 망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용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콘텐츠 제공사업을 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라면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약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34조의3 신설)	2021-11-25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1인)」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 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06년 제정 당시와는 달리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특정장소형 게임)과 비아케이드게임물(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2021-11-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게임의 정의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로 한정하는 한편, 게임을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함 (안 제2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제작·유통 및 제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④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은 청소년이 이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본인인 증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안 제19조) ⑤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⑥ 등급분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 결과와 달리 게임을 제공·유통시키는 행위 등 현행 등급분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행성을 심히 자극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등급위반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신설) ⑦ 게임제공업자는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26조제2항) ⑧ 디지털 게임 제공자는 해당 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디지털 게임의 내용이 현저하게 수정되어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초로 등급을 부여한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27조 및 제28조) ⑨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이 등급결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게임관리위원회가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4조) ⑩ 디지털 게임관련사업자와 특정장소형 게임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안 제59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u>」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택시 운송플랫폼사업으로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으로 구분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모두 요금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하여 시장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면서,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경우 부당한 요금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함께 규정하여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요금 부담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경우, 요금 등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조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요금을 과도하게 받거나 최근 택시를 호출할 때 최대 5천원까지 중개요금을 받는 등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플랫폼사업과 같이 요금에 대한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요금(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20,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85조제1항제22호)	2021- 11-2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12/1(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 안건처리	
	12/2(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의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12/3(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66호 발간	
국회도서관	11/30(화)	「국외 현안리포트」 발간 - 디지털 시대의 반도체 산업과 각국의 정책: 경제 안보 관점을 포함한 고찰	
	11/3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9호 발간 -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예산정책처	11/29(월)	「NABO focus」 제38호 발간 - 디지털세 최종합의 내용 및 향후과제	
	11/29(월)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7호 발간 - 비용추계 · 세제분석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현안 등의 통합적 · 체계적 분석 제공	
입법조사처	주중	「이슈와 논점」 발간 - 보안처분의 현황 및 쟁점사항	
	11/29(월) 10: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 입법과정 개선방안: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쟁점	온라인
	11/29(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농식품 생산, 유통, 소비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생활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온라인
	11/29(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1년 일본 정세평가와 전망	온라인
	11/29(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2년 중국의 대외정책 평가와 2022년 전망	온라인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입법조사처	11/30(화) 16: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 보장 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온라인
	12/1(수)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및 안전운임제 시행 현황과 평가	온라인
	12/1(수) 15: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검토	온라인

[별첨1] 제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11/29(월) 13:30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중앙선관위 위원(문상부)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1/29(월) 14:00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기관업무보고
운영위	11/29(월) 10:00	국회운영개선소위	법안심사 등
정무위	11/29(월)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기재위	11/29(월) 14:00	예결산소위	보증동의안 심사
	11/29(월) 15:00	조세소위	법안심사
	11/30(화) 14:00	전체회의	법안의결 등
과방위	11/30(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
국방위	12/1(수) 10:00	전체회의	법안심사
행안위	11/29(월)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 및 법안상정
	11/30(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
	12/1(수) 09:30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
	12/2(목) 09:30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
농해수위	12/2(목) 09:00	농림법안소위	법안심사
	12/3(금)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 및 법안상정
산자위	11/30(화) 10:00	중소벤처기업소위	법안심사
	12/1(수) 10:00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
	12/2(목)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29(월) 09:30	부국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 - 과학기술패권국가 : 미·중 패권전쟁 중, 대한민국의 전략은?	양향자 의원실, 한국경영자총협회 외	의원회관 대회의실
11/29(월) 10:00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	이원욱, 윤후덕, 이학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9(월) 14:00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 K-POP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김병욱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9(월) 14:00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강은미 의원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외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30(화) 10:00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입법 공청회	한정애, 유의동 의원실, 국회기후포럼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30(화) 15:00	국회기후변화포럼 토론회 -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윤주경, 강대식 의원실, 고려 대 정보보호대학원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수) 14:00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	권영세 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2/2(목) 14:00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	소병훈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2/3(금) 14:00	「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 국제업무단지·용산정비창 용산공원	권영세, 박희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11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1/23(화)	「현안, 외국에선?」 제24호 발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 현황	
입법조사처	11/22(월)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3건) -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 중국의 전력공급 부족사태 원인과 시사점 -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11/24(수) 07:30	「제11회 NARS 시선과 논란」 - Big Tech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 - 발제: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유튜브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22(월) 10:00	개인형이동수단(PM) 활성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서범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22(월) 14:00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4(수) 14:00	방위산업 보안정책 토론회 - 초연결시대 방산 보안 구조전환 방향	윤주경, 강대식 의원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5(목) 09:00	K-스마트팜 성공방식과 향후 과제는	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5(목) 14:00	동북아시아 녹색경제공동체 세미나	김홍걸 의원실,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외	의원회관 1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